

사전감사대상

감사

문서 기번호	자용 5511 - 586			
처리기한	19	보존기간	이 사 부총재 총 재	
기안	1990. 8.	명수년		
발신	19			
대리과장		부부장	부장	
김영환		[Signatures]		
가안자	신은음	합의 (법규과) 기획부장	전경근	직무전환 문득문 제 1장
소속	금융기획과	참조		
직위	경영전략 4465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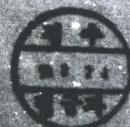
수신
참조
제 목

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

금융기관의 사모사채인수를 허용하기 위하여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을
보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첨: 「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」 개정(안) 1부, 끝.

1198



(등록처)

발송
업무연락 기록
공요
의견

「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」 개정(안)

내 영	개 정	비 고
제1조 ~ 제5조 (성 령) 제6조 (사채보증 및 인수) ① 금융기관의 보증 또는 인수대상 사채는 「증권거래법」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발행되고 5년이내에 최종상환일이 도래하는 사채에 한한다. ② ~ ⑥ (성 령) 제6조의 2 ~ 제9조 (성 령) (신 설)	제1조 ~ 제5조 (현행과 같음) 제6조 (사채보증 및 인수) ① 금융기관의 보증대상 사채는 「증권거래법」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매출방식으로 발행되고 5년이내에 최종상환일이 도래하는 사채에 한한다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6조의 2 ~ 제9조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세칙은 1990. 8.27부터 시행한다.	- 금융기관의 사모사채인수 허용 - 시행일자 명시